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56호의2서식] <개정 2016. 7. 21.>

폐기물처리(재활용) [] 신 고 서 [] 변경신고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14일

신고인	①상 호(명 칭)	②사업자등록번호
	③성명(대표자)	④생년월일
	⑤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

⑥업 종	
⑦폐기물처리 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	
⑧재활용대상 폐기물	
⑨재활용 제품 등	
⑩시설 현황 (종류, 규격, 수량)	
⑪1일 처리능력	
⑫수집·운반차량 현황 (종류, 톤수, 대수)	
⑬재활용 공정도	
⑭영업개시일	

	규 격(m)	용 량(㎥)	수 량(개 소)	보관대상 폐기물	허용보관량(톤)
⑮ 보 관 시 설 및 보관량					
⑯변 경 사 항	변경 전				
	변경 후				
⑰변 경 사 유				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제2호
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제2호
에 따라 폐기물처리 []신 고 []변경신고
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 가.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. 폐기물 수집·운반 계획서(폐기물을 스스로 수집·운반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) 다. 폐기물 재활용 유형에 따른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 설명서 라.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마.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 설치명세서(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) 바.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사. 폐기물을 성토재·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 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(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 2. 변경신고의 경우: 신고증명서	수수료 없음

처리절차

